##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인재근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24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0.

발 의 자 : 인재근·고영인·남인순

노웅래 • 문진석 • 서영석

양경숙 • 윤준병 • 이장섭

주철현 · 최종윤 · 최혜영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로써 그 금액의 설정에는 광범위한 입법상의 재량이 인정되지만 제재의 성격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이 필요함.

따라서 위반행위 간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가 생 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위반행위에 대한 법익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위생교육 미이수,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, 이물보고 위반,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하는 등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47조).

### 법률 제 호

##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2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제25조 또는 제34조를"을 "제25조를"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·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의4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의2.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10의4.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
- 1의2.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 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30조제1항·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

- 2. 제30조제2항·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
- 3.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자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(과태료) ① (생 략)	제47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2
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	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
1.・1의2. (생 략)	1.・1의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의3.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
	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
	<u>자</u>
2. • 3. (생 략)	2.•3. (현행과 같음)
4. <u>제25</u> 조 또는 제34조를 위반	4. <u>제25조를</u>
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	
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	
5.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	<u>&lt;삭 제&gt;</u>
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	
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	
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	
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	
<u>그 영업을 한 자</u>	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<u>7. 제30조제1항·제3항 및 제6</u>	<u>&lt;삭 제&gt;</u>
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	
아니한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	
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	
에 종사하게 한 자	

8.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 | <삭 제> 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 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 업을 한 자

9. ~ 10의3. (생략) <신 설>

#### 11. (생략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 | <삭 제>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<신 설>

2. ~ 2의3. (생략) 2의4.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 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

9. ~ 10의3. (현행과 같음) 10의4.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 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 니한 자

11. (현행과 같음)

1의2.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 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 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 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 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2. ~ 2의3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- 3. (생략)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부과・ 징수한다.

<신 설>

- 3. (현행과 같음)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
- 1. 제30조제1항·제3항 및 제6 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 원을 그 검사업무 또는 영업 에 종사하게 한 자
  - 2. 제30조제2항·제3항 및 제5 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 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 업을 한 자
  - 3.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고를 한 자
 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,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<u>·구청장이</u> 부과· 징수한다.